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20565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20565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5511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 종결 2018. 5. 16.

판결 선고 2018. 6. 8.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55110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199,541,831원 및 그 중 109,726,583원에 대하여는 2016. 8. 10.부터,
88,789,735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2)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8,78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89,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8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마항 기재 부분 중 제6면 4)항 제2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시점인 2017. 1. 1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100,000원이다'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감정시점인 2017. 1. 19. 기준 시가는 189,100,000원이며, 당심 감정시점 무렵인 2018. 3. 20. 기준 시가는 170,000,000원이다'로, 같은 항 제6행의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F, 당심 감정인 L의 각 시가감정결과'로 고치고, 제2.의 마항 기재 부분 중 제11면 제15행의 '2017. 1. 19.'을 '2018. 3. 20.'로, 같은 면 제15, 16, 18, 19행의 '189,100,000원'을 모두 '17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9행, 제12면 제1, 2행의 '89,100,000'원을 모두 '7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보태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마항 기재 부분에 각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탠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 뒤에 보태는 부분

『피고 C은, 2015. 1. 5.과 같은 해 8. 4. 자신이 피고 A에게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무렵에 가까운 2016.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면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C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악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는 없고, 양도하지

않고 증여한 것은 당시 피고 A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피고 C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서에도 담겨있지 않다가 당심에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야 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위 주장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역만으로 그 금원의 성격이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가 위와 같은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 뒤에 보태는 부분

『나아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40,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A에 대하여 그와 같은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의사가 없고,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한 피고 A의 간청에 못 이겨 호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비용으로 2,3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로 총 1,6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피해만 입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구상보증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신의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조찬영

판사황승태

별지